「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3. 29. 개정 판 (시행 2021. 3. 1.) → 2020. 12. 7. 개정 판 (시행 2021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451/compare?from=1175&to=1160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0:06:4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책임과 권한)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.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.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(부)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,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. 전공 교육과정 변경 3. 학과(부)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교육과정 설계,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.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.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	**제3조(책임과 권한)**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.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.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과(부)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,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. 전공 교육과정 변경 3. 학과(부) 단위의 교과과정 학과회의 운영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교육과정 설계, 개편 및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2. 교육과정 편성표 심의 3. 교육과정 수정 및 변경 요청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1.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.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. 학과(부) 교육과정위원회 4.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 한다.	**제4조(운영위원회)** ① 주관부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②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1. 교육과정운영위원회 2. 교육과정심의위원회 3. 학과(부) 교육과정위원회 4.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